

「국가물관리위원회-공공·연구기관

통합물관리 협의체」 협약서

국가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환경공단, 한국수력원자력(주)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,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국립환경과학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환경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 “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은 통합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「국가물관리위원회-공공·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」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발족하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【목적】 이 협약은 협의체가 통합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【협력사항】 각 기관은 위원회 중심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위원회는 협의체의 소통과 협업, 내실있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.
- 공공기관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물관련 계획, 기술,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업한다.
- 연구기관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의 평가와 제언, 대안 검토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협업한다.

제3조【실무조직 구성 및 운영】 ①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은 협력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업무 협의를 위하여 기관별 실무조직을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직의 명칭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【신의성실】 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한다.

제5조【협약기간】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. 다만, 기간 만료일 이전에 각 기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【협약의 해석 및 변경】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【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】 ① 각 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【비밀유지】 각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이 협약이 기간 만료,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.

제9조【협약의 대체 시행】 지난 2020년 6월 1일 및 2021년 4월 6일에 각각 체결한 협약사항은 본 협약서로 대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【법적구속력】 이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1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5. 24.



국가 물 관리
위 원 원 회
장

허 재 영



한국 수력
원자력(주)
사장

정재훈



한국 환경
연원
원장

이창훈



한국 농어촌
공사
사장

이병호



국립 재난 안전
연구원
원장

이종설



한국 농촌 경제
연 구 원
원장

김홍상



한국 수자원
공사
사장

박재현



국립 환경과학원
원장

김동진



국립
환경
원장

강현수



한국 환경
단장
공 이 사

안병옥



한국 해양 수산
개발 원장

김종덕



한국 건설 기술
연구원
원장

김병석

이창훈

김홍상

강현수

김병석